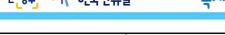


평생친구



보건복지부

보도참고자료

배 포	일	2021. 3. 11. / (총 3매)	담당부서	요양보험제도과
과	장	임 혜 성	전 화	044-202-3490
담 딩	자	김 정 열	U Y	044-202-3492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 (3.11~4.20)

- 재심사청구 절차 개선, 급여 통보 절차 명확화, 지정·갱신 심사 요건 용어 변경 -
- 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대상·범위 확대,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개정('20.12.29)에 따른 후속조치로서,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1일(목)부터 4월 20일(화)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- □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**재** 심사청구 절차를 개선하고, 급여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며, 장기요양 기관 지정·갱신 심사 요건상 용어 변경 등을 하려는 것으로,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장기요양 재심사청구의 기한^{*}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청구 신청서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일을 작성하도록 하였다. (안 제40조)
 - * (심사청구·재심사청구) 장기요양인정·등급·급여비용·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,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할 수 있음(법 제55조·제56조)

(재심사청구 기한) 심사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(법 제56조)









평생친구

- 또한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**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**부터 **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***하면, 장기요양인정서뿐만 아니라 **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유효기간도 같이 변경**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. (안 제21조)
 - *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미성년자·노인 외에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 제공(원칙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공)
 - ※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: 장기요양 등급판정 과정에서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급여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문서(법 제17조)
 - ※ 장기요양인정서 : 장기요양 등급판정 완료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등급, 급여의 종류·내용 등을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문서(법 제17조)
-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, 장기요양기관의 **지정·갱신** 심사 시 지자체장이 검토해야 하는 행정처분 대상을 개정 법과 동일하게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려는 자로 변경하였다. (안 제24조)
 - * (현행)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 → (개정)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
- 그 외에도 장기요양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대상으로,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급여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, (안 [별표3])
- 개정 법과 동일하게 현행 **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**를 **개인별장기 요양이용계획서**로 **명칭을 변경**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였다. (안 제6조, 제42조 등)







평 생 친 구

- □ 보건복지부는 **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**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 -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년 4월 20일(화)까지,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**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
 -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홈페이지) (www. 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─ < 의견 제출방법(우편) > -

○ 제출처

- 주소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
- FAX : (044) 202 3971
- 기재사항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 - 성명(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등
- ※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
- < 별첨 >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

